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내용

# 저가하도급 의무심사제도 법제화

건설산업기본법이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주요 개정 내용 중 4대 보험료 공사원가 계상, 직접시공의무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수수료 원가계상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의무하도급제도 폐지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설교통부는 저가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당해 심사 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출내역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하였다.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건설업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또한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하도록 하여 당해 비용이 공사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일정비용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화하였다.

특히 당초 2007년 1월 1일로 한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시기는 2008년 1월로 유예하였으며, 건설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에 따

른 설비 및 전문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 공공공사에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도입, 위장직영 적발조치 방안 강구 등 관련제도 보완을 정부에 권코키로 결정하였다.

### ■ 저가하도급심사제도 의무화(제31조)

국가·지자체 및 공공발주기관에 대해 저가하도급심사를 의무화하고,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요구에 불응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 도급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공사원가 반영 의무화(제34조 제3항, 신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토록 의무화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 도급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 ■ 설계변경 등 계약금액조정내용 하수급인에 통보 의무화(제36조 제2항 신설)

국가·지자체 및 공공발주기관에 대해 설계변경·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조정 사유와 내용을 하수급인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4대 사회보험료 공사원가변영 의무화 등(제22조 제5항 신설)

건설공사 도급계약당사자는 고용·산재·국민연금·건강보험료 등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도록 의무화하였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 도급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하며, 정산방법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공사 직접시공의무제 도입(제28조의 2 신설)

1건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에 대하여 일정비를 이상을 직접 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으며,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 도급계약 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미통보 또는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도급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직접시공의무 위반시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제30조 삭제)

당초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던 의무하도급제도를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유예하였다.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의무하도급제도 폐지에 따른 설비 및 전문업체의 반발을 고려, 아래 사항의 관련제도 보완을 정부에 권고기로 결정하였다.

- 1) 주계약자형 공공도급제도의 공공공사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주계약자형공공도급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국가계약법에는 미도입

되어 공공공사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음.

- 2)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부대공사의 범위) 개정 사항임.

- 3) 위장직영 적발조치 방안 강구

■ 건설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운영 근거 마련(제24조)

건설교통부 장관은 건설업자 등의 자본금, 경영실태, 공사수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허위실적 신고자에 대한 제재 강화(제82조 신설)

건설업자가 실적신고시 건설공사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허위로 제출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벌금 외에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업 폐업신고제도 도입(제20조의 2 신설)

건설업 폐업신고 제도를 신설하고, 등록관청은 폐업신고시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하도록 하였다.

■ 건설업자의 지위 승계 등(제85조의 2 신설)

폐업신고로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 재등록시 폐업 신고 전의 건설업자 지위 및 행정처분 효과가 승계되도록 하고, 폐업 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시정명령·영업정지·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발주자에 대한 점검 신설(제86조의 2 신설)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가·지자체 및 공공발주자에 대하여 건설업자의 선정, 건설공사의 적정시공 노력 등 발주자의 책무를 점검·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주요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
<p>제31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등)</p> <p>①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p> <p>②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제31조(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p> <p>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p> <p>②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기준, 하수급인의 변경요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p> <p>①~④(생략)</p> <p>⑤&lt;신설&gt;</p>	<p>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p> <p>①~④(현행과 같음)</p> <p>⑤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 등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소요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제28조의2(건설공사의 직접시공)</p> <p>① 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0억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사금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공사를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현행	개정
<p>제30조(공사 일부의 하도급 등)</p> <p>① 일반건설업자는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에는 전체공사금액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의한 금액에 상당하는 공사를 해당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건설공사를 분리하여 하도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건설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 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발주자는 건설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직접시공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p> <p>&lt;삭제&gt;</p>
<p>&lt;신설&gt;</p>	<p>제85조의 2(건설업자의 지위승계 등)</p> <p>①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6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건설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업자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전의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된다.</p> <p>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신고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여 제81조 내지 제83조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을 할 수 있다.</p>